

의안번호	제 84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9월 14일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840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14일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 □ 제안 이유

-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었지만,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실질적 역할·권한의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두어 국가차원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재정지원 관련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시·도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할 것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준 및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함.

## □ 붙 임 : 건의안

- 보낼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실질적 역할·권한의 한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시행 전부터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도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야 진정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은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후생복지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상충이 되고 지방재정 지원이 불합리하여 현재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선 경찰관에게 돌아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시·도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제도나 감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법령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경찰청의 경찰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과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일선 경찰관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령 정비를 통한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기준 및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청북도의회